

# 17세기 조선의 庶祖母服 논의의 전개와 그 함의

김진우\*

## 〈차 례〉

1. 머리말
2. 庶祖母服 논의와 三年說의 등장
3. 嫡統 강조의 期年說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 조선에 등장한 서손의 서조모복 논의의 전개와 그 함의를 고찰하였다. 17세기 예에 대한 조정과 사족의 관심이 높았던 때다. 특히 예 가운데 상례에서 중법의 기능(적통 강화, 친족 결집)에 집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드러나는 절차가 상복이다.

상복 중 삼년복은 적통과 관련된 것으로, 참최삼년복과 자최삼년복으로 나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적장자를 위해 입는 참최삼년복과 자최삼년복은 적장자가 앞으로 적통을 계승해야 할 사람으로 입게 되는 것이다. 삼년복과 적통의 연관성은 적손이 적처인 할머니를 위해 입는 자최삼년복에서도 확인된다. 적손이 아닌 서손들은 적통을 계승하지 않아서 할머니를 위해 자최삼년복이 아닌 자최부장기복을 입었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간혹 첩인 할머니를 위한 상복인 서조모복에 대해 자최삼년복을 용인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조선에서는 17세기에 서손의 서조모복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 논의는 김장생과 송준길의 대화를 시작으로 자최삼년복을 주장하는 측과 자최부장기복을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이처럼 17세기 조선에서 발생한 서조모복 논의에서 사족의 양분된 입장은 ① 18세기와 달리 복상에 있어서 서자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용인은 ② 유교 상례 규정의 변용이라 할 수 있고, 이 변용은 ③ 중법의 기능들이 조선 사회에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재)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주제어] 조선, 서손, 서조모, 상복, 종법

## 1. 머리말

戰後 17세기 조선 사회는 전란을 통해 조정과 士族의 禮에 관한 관심이 어느 시기보다 높았던 사회였다. 예, 다시 말해 冠婚喪祭禮에 내재된 宗法<sup>1)</sup>을 사회에 일반화하는 일은 예의 설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었다. 四禮 가운데서 喪禮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sup>2)</sup> 종법의 기능인 宗子에 대한 공경과 친족 규합(敬宗故收族)<sup>3)</sup>이 잘 내재된 의례다. 그 기능이 두드러지는 상례 절차가 喪服이다. 상복은 죽은 지 나흘째 입는 복장인데,<sup>4)</sup> 친족의 친소 관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이는 五服으로, 斬衰服, 齊衰服, 大功服, 小功服, 總麻服이다. 그 가운데 斬衰三年服과 齊衰三年服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복으로 3년 동안 입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嫡長子에서 적장자로 이어지는 嫡統을 확인하고 그것을 계승한 喪主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嫡子和 嫡孫이 아닌 庶子(妾子)와 庶孫(妾孫)<sup>5)</sup>의 삼년복 착용 논의는 상복에 내재된 종법이 사회에 정착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종래 서자(첩자)에 관한 연구<sup>6)</sup>는 세 방향, 즉 관직 진출, 향촌 사회, 집안에

1) 『家禮』卷1, 『通禮 祠堂』, “爲四龕以奉先世神主 … 黃氏瑞節曰 … 至於冠昏喪祭 莫不以宗法行其間”.

2) 『家禮會成』卷1, 『文公家禮會成 序』, “冠昏喪祭 皆禮之大者 而喪爲尤大”.

3) 『禮記正義』卷34, 『大傳』,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

4) 『家禮』卷4, 『喪禮 成服』.

5) 庶를 妾으로 볼 것이나, 衆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서자와 서손의 범위가 다르다(김진우, 『朝鮮後期 庶孽의 宗法的 地위 약화와 그 원인』, 『朝鮮時代史學報』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a 참조). 전자처럼 보면 서자와 서손에 첩의 아들(妾子)과 손자(妾孫)만 포함되고, 후자처럼 해석하면 서자와 서손에 적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衆子), 적장자의 아들(嫡孫), 나머지 아들의 아들(衆孫), 첩의 아들(妾子), 첩의 손자(妾孫)가 해당된다. 이를 참작하여 본고에서는 17세기 서조모복 논의에 참여한 사족이 庶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표 1>에 구분하였다.

6)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이상백, 『庶孽 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問題』, 『震檀學報』 1, 진단학회, 1934; 배재홍, 『조선 후기 서얼허통』,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배재홍, 『조선 후기 서얼허통』, 『경북사학』 10, 경북사학회, 1987; 이종일, 『조선시대 서얼신분변동사 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김인걸, 『조선후기 鄉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 ‘鄉權’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지승중, 『조선 전기의 서얼신분』, 『사회와 역사』

서 서자의 지위를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관직 진출 연구는 초기에 제정된 庶擊禁錮法으로 서자의 관직 진출이 막혔고 후기에는 이 법이 완화되어 서자의 신분 상승과 신분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향촌 사회 관련 연구는 鄉案, 鄉約 등을 고찰하여 서자가 관직 진출에 따른 신분 상승으로 향촌 사회에서 증인과 함께 新鄕으로 성장하여 신분제 동요를 야기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집안에서의 서자 연구는 상속제, 재산 분급, 적서 간의 家産을 둘러싼 분쟁 등을 확인하여 사족은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嫡庶를 구분하고 서자를 차별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세 방향의 연구 가운데 服喪에서 서자의 지위와 종법 정착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자 혹은 서손에 관한 복상 논의인 庶祖母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조모복은 서손이 서자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첩인 할머니(庶祖母)를 위해 입는 상복을 논의한 것이다. 우선 사죄삼년복과 적통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서조모복 논의에서 나온 삼년설과 기년설의 논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자의 지위, 유교 상례의 變用 양상, 종법의 정착 추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2. 庶祖母服 논의와 三年說의 등장

### 1) 庶祖母服 논의의 발단

서조모복 논의의 요점은 서손이 첩인 할머니(庶祖母)를 위해 三年服을 입

27, 한국사회사학회, 1991; 김정현, 「17세기 서얼 직역 변동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정궁식, 「16세기 첩자의 제사 승계권」, 『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회사학회, 1998; 한기범, 「17세기 서얼의 종법적 지위 - 「예문답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1998; 고민정,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김진우, 앞의 논문, 2019a; 고민정, 「조선 후기 사족 家系의 계승방식에 관한 연구 - 부안 청호고씨 사례를 중심으로 -」, 『古文書研究』 55, 한국고문서학회, 2019; 허모영, 「19세기 김해 지역 향반가문의 적서(嫡庶) 변종과 탈종(奪宗)을 둘러싼 갈등」, 『震檀學報』 132, 진단학회, 2019; 김정운, 「19세기 초반 경상도 사대부 家에서 庶族의 역할과 실제」, 『朝鮮時代史學報』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느냐 혹은 期年服을 입느냐이다. 여기서 삼년복(참최삼년복, 자최삼년복)은 다섯 가지 상복(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시마) 가운데 가장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끼리 27개월 동안 입는 상복으로 적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참최삼년복은 적장자를 포함한 자식들이 죽은 아버지를 위해 입는 상복이고,<sup>7)</sup> 자최삼년복은 자식들이 죽은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이다.<sup>8)</sup> 부모 이외의 대상 가운데 부모가 적장자를 위해 입는 삼년복에서 적통이 확인되는데, 아버지가 적장자를 위해 입는 참최삼년복과 어머니가 적장자를 위해 입는 자최삼년복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경우, 아버지는 적장자가 죽으면 그 적장자가 위로부터 조상의 正體<sup>9)</sup>를 계승하고, 앞으로 重(主宰權)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sup>10)</sup> 그를 위해 참최삼년복을 입는다. 여기서 조상의 정체를 계승한다는 것은 적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서자(중자와 첩자)는 자신의 장자를 위해 참최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 이는 서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적통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1)</sup> 참최삼년복 착용에서의 적자와 서자의 구분은 적통을 계승한 사람을 높여 적통이 둘로 나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sup>12)</sup>임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참최삼년복은 적장자에서 적장자로 이어지는 적통과 관련 있는 상복으로, 주재권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폐질에 걸린 적장자, 후사가 된 서손, 서자, 적손은 참최삼년복 시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sup>13)</sup>

후자의 경우, 어머니는 적장자가 죽으면 아버지가 적장자를 위해 상복을 낮춰 입지 않기 때문에<sup>14)</sup> 조상의 정체인 적장자를 위해 상복을 낮춰 입지

7) 『儀禮注疏』卷29, 『喪服』, “父 傳曰 爲父何以斬衰也 父 至尊也”.

8) 『儀禮注疏』卷30, 『喪服』, “父卒則爲母”.

9) 여기서 정체는 종자가 될 사람의 혈통적 조건으로 적처 소생의 장자를 가리킨다(『禮記正義』卷32, 『喪服小記』, “是故祖遷於上 宗易於下 尊祖故敬宗 敬宗所以尊祖禰也【鄭注】宗者 祖禰之正體”).

10) 『儀禮注疏』卷29, 『喪服』, “父爲長子 … 傳曰 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11) 『禮記大全』卷15, 『喪服小記』, “庶子不爲長子斬 不繼祖與禰故也【注】庶子不得爲長子服斬衰三年者 以己非繼祖之宗 又非繼禰之宗 則長子非正統故也”.

12) 『禮記正義』卷32, 『喪服小記』, “庶子不爲長子斬 不繼祖與禰故也【鄭注】尊先祖之正體 不二其統也”.

13) 『儀禮注疏』卷29, 『喪服』, “父爲長子 … 傳曰 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 【疏】若然 雖承重不得三年有四種 一則正體不得傳重 謂適子有廢疾 不堪主宗廟也 二則傳重非正體 庶孫爲後是也 三則體而不正 立庶子爲後是也 四則正而不體 立適孫爲後是也”.

않았다.<sup>15)</sup> 그래서 자식이 자신을 위해 입어줄 자취삼년복을 죽은 적장자를 위해 입었다.<sup>16)</sup> 이처럼 참취삼년복과 자취삼년복은 적장자의 혈통적 순수성(正體)을 전제로 하는, 적통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복이다.

이는 적손이嫡妻인 할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후 적손은 적처인 할머니를 위해 자취삼년복을 입었다. 이에 대해 明代 胡廣(1370~1418)은 적손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경우로 보아 ① 적손이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를 위해 삼년복을 입었으니 죽은 할머니를 위해서도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았다. 호광에 따르면 ②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할머니가 죽으면 손자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 것처럼 할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었다. 이 경우에는 ③ 아버지가 죽어 적손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할머니의 후사가 되어 그녀를 위해 자취삼년복을 입는 것이었다.<sup>17)</sup> 이에 반해 서손은 적통을 계승한 사람이 아니므로 첩인 할머니를 위해 자취삼년복이 아닌 齊衰不杖期를 입었다.<sup>18)</sup>

그러나 서손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 즉 서조모복을 두고 조선과 중국에서는 종종 이견이 발생하였다. 특히 조선에서는 17세기에 서조모복 논의가 등장하였다. 조선의 서자는 오랫동안 첩의 자식으로 차별받았지만, 17세기 전에는 그 이후와 달리 첩의 자식이어도 적통을 계승할 적자가 부재하면 서자가 적통을 계승하였고<sup>19)</sup> 삼년복을 착용하기도 하였다.<sup>20)</sup>

하지만 17세기 이후부터 조선 사회에 종법이 적용되어 기존 경향에 변화가

14) 『儀禮注疏』卷30, 「喪服」, “母爲長子 … 傳曰 何以三年也 父之所不降 母亦不敢降也”.

15) 『儀禮注疏』卷30, 「喪服」, “母爲長子 … 傳曰 何以三年也 父之所不降 母亦不敢降也【鄭注】不敢降者 不敢以己尊降祖禰之正體”.

16) 『儀禮注疏』卷30, 「喪服」, “母爲長子【疏】… 但父爲長子在斬章 母爲長子在齊衰 以子爲母服齊衰 母爲之不得過於子爲己 故亦齊衰也”.

17) 『禮記大全』卷15, 「喪服小記」, “祖父卒 而后爲祖母後者三年【注】適孫無父 既爲祖三年矣 今祖母又死 亦終三年之制 蓋祖在而喪祖母 則如父在而爲母期也 子死則孫爲後 故以爲後者言之”.

18) 『家禮』卷4, 「喪禮 成服」, “不杖期 … 庶子之子爲父之母 而爲祖之後則不服也”.

19) 이이 외, 임재완 역,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三星文化財團, 56~59쪽, 2001; 김진우, 「立後를 통해 본 朝鮮後期 庶孽의 宗法的 지위」,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13~21쪽.

20) 『葵史』卷乾, “臣等又竊伏念 代服一節 姑舍歷代之所曾行 自癸巳定制之前 已成國俗 而自癸巳定制之後 更爲邦禁”.

발생하면서 사족이 서자를 통한 가계 계승을 꺼려 후사를 세우거나 서자에게 일부 제사만 맡기기 시작하였다.<sup>21)</sup> 이러한 조선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서조모복 논의는 서자의 지위 변화와 종법의 정립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의의 발단은 宋浚吉(1606~1672)과 金長生(1548~1631)의 대화이다.

물었다. “① 첩손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면 그 아버지의 소생모를 위해서는 비록 상복이 없지만, 응당 重을 계승한 경우의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첩자는 어머니를 위해 시마복을 입고 心喪을 한다는 사례를 따라 3년 동안 심상을 해야 할 듯하니 어떻습니까?” 【송준길】 “② 첩모는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으니 ③ 본래 重을 계승할 의리가 없다.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비록 상복이 없더라도 어찌 갑자기 일반 사람과 같을 수 있겠는가? ④ 여러 손자가 하는 기년복의 제도에 의거해 심상을 하는 것이 맞다.”<sup>22)</sup>

위의 김장생과 송준길의 대화에서 송준길은 ① 서손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면, 서손이 아버지의 소생모인 첩인 할머니를 위해서는 규정상 상복이 없지만 의리상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양 측면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되면 아버지의 어머니를 위해 시마복을 입고 심상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sup>23)</sup> 심상으로 3년 동안 하는 것<sup>24)</sup>이 어떠한지 김장생에게 물었다.

김장생은 우선 ② 『예기』 「상복소기」에 서자가 첩인 어머니를 대대로 제

21) 『明齋先生疑禮問答』 卷1, 「宗法」, “人家或有以妾子奉祀者 或有舍妾子而立後者 或有以妾子只奉己祀爲一支 而祖以上祀 則移奉於次子者 惟在其家長之處置而已 然有妾子 則不立後以妾子奉祀者 禮之正也 下二款 則國俗也”.

22) 『沙溪全書』 卷38, 「疑禮問解 喪服 妾孫承重爲己所生祖母無服」, “問 妾孫爲祖後 則爲其父所生母 雖無服 然亦應服承重三年者也 似當依妾子爲母總 而心喪之例 爲心喪三年 如何【宋浚吉】 妾母不世祭 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不然矣 雖無服 豈可違同於平常之人乎 依諸孫期服之制 而若心喪者可也”.

23) 『儀禮注疏』 卷33, 「喪服」, “總麻三月 … 庶子爲父後者 爲其母”; 『家禮』 卷4, 「喪禮 成服」, “五日總麻三月 … 其降服 則庶子爲父後者爲其母”.

24) 『家禮』 卷4, 「喪禮 成服」, “楊氏復曰 … 今服制令 庶子爲後者爲其母總 亦解官中心喪三年”.

사 지내지 않는다는 문장<sup>25)</sup>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③ 예전에 자신이 姜頤期(1580~1643)에게 서손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않으면 承重服인 삼년복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첩인 할머니를 위해 자최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고 했던 주장<sup>26)</sup>을 번복하였다. 김장생은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는 구절<sup>27)</sup>에 따라 ④ 손자가 첩인 할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지 않고(無服) 1년 동안 심상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이 대화에서 송준길은 서손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다면, 자기 아버지의 소생모인 첩인 할머니를 위한 상복이 없지만, 자최삼년복을 해야 하는 의리가 있으므로 3년 동안 심상을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김장생의 주장은 자최삼년복을 입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서 1년 동안 심상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에서 규정이 없는 서손의 서조모복을 두고, 김장생과 송준길은 각자의 논리대로 서손의 서조모복을 규정하고자 하였고 심상을 통해 서손이 첩인 할머니의 상을 치르는 것을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주장은 이후 金集(1574~1656), 朴世采(1631~1695), 宋時烈(1607~1689) 등이 참여한 서조모복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 2) 三年說의 전개

물었다. “① 중을 계승한 첩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마복을 입어야 하지만, 첩자의 장자는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합니까? 적자가 있다면 적손은 없다는 문장에 따르면 本服을 입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② 첩자의 次자가 자기 할머니를 계승한(承重) 사람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면 삼년복을

25) 『禮記正義』卷33, 『喪服小記』, “慈母與妾母 不世祭也【鄭注】以其非正 春秋傳曰 於子祭 於孫止”.

26) 『同春堂別集』卷2, 『書【師友講論】上沙溪先生』, “前見答姜博士之教 妾孫爲祖後 則爲其父所生母無服矣 非爲祖後 則爲其祖母 當服齊衰三年云云 妾孫之爲祖後者 爲其父所生母雖無服 然亦應服承重三年者也 似當依妾子爲母總而心喪之例 爲心喪三年如何 答 雖無服 豈可違同於平常之人乎 依諸孫期服之制而若心喪者可也”.

27) 『家禮』卷4, 『喪禮 成服』, “不杖期 … 其正服 則爲祖父母 … 庶子之子爲父之母 而爲祖後則不服也”.

28) 『沙溪全書』卷32, 『喪禮備要 成服 齊衰不杖期』, “庶子之子爲父之母 而爲祖後則不服【按 猶當心喪期】”; 『沙溪全書』卷38, 『疑禮問解 成服 齊衰不杖期 妾孫承重爲其所生祖母無服』.

입을 수 없습니까?” 【송준길】 “보낸 편지의 말은 옳다. 다만 상례에서만은 비록 미천하더라도 상주가 없어선 안 된다. 자신의 아버지가 비록 살아있어도 상주는 아니므로 차자가 당연히 승중복을 입어야 할 듯하다.”<sup>29)</sup>

한편 위의 김집과 송준길의 대화에서 ① 송준길은 적통을 계승한 서자가 첩인 어머니를 위해서 시마복을 입으면, 적통을 계승한 서자의 장자는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 김집에게 물었다. 그는 『의례』 「상복」 적손을 위해 자취부장기를 입는다는 문장의 전(傳)에서 적자가 있다면 적손은 없다는 구절<sup>30)</sup>을 참고하여 기년복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김집에게 물은 것이다.

여기서 적자가 있다면 적손은 없다는 구절은 적손은 적자가 죽으면 적통을 계승할 사람이지만, 적자가 살아있다면 모두 서손이 된다는 의미이다.<sup>31)</sup> 이 구절에 따르면 송준길은 서자가 적통을 계승하였으면, 서자의 장자는嫡이 아닌庶가 되므로 서손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sup>32)</sup> 주장한 것이다.

② 나아가 송준길은 서자의 차자가 적통을 계승한 아버지를 대신해 첩인 할머니의 상에 상주가 되었는데, 적통을 계승한 아버지(서자)가 살아있으면 자취삼년복을 입지 못하는지도 김집에게 물었다. 이 경우는 서자인 아버지가 적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상에 시마복을 입어 상주를 맡을 수 없으니, 그 대신 자신의 차자가 상주가 되는 것이었다.

김집은 송준길의 주장 가운데 ① 서자의 장자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서자의 차자가 삼년복을 못 입는가의 질문은 틀렸

29) 『慎獨齋全書』卷13, 「疑禮問解續 成服 承重妾子之子爲其父之所生母服」, “問 妾子承重者爲其母當服總矣 妾子之長子當何服 據有嫡子無嫡孫之文 似當服本服如何 妾子之第二子卽是承重其祖母之人而爲其父尙存 不得服三年耶 【宋浚吉】 來示得之 但喪雖微賤不可無主 其父雖存 卽非主人 第二子似當服承重之服矣”.

30) 『儀禮注疏』卷30, 「喪服」, “適孫 … 傳曰 何以期也 不敢降其適也 有適子者無適孫 孫婦亦如之”.

31) 『儀禮注疏』卷30, 「喪服」, “適孫 … 傳曰 何以期也 不敢降其適也 有適子者無適孫 孫婦亦如之 【鄭注】 周之道 適子死 則立適孫 是適孫將上爲祖後者也 長子在 則皆爲庶孫耳”.

32) 『家禮』卷4, 「喪禮 成服」, “不杖期 … 庶子之子爲父之母”.



다고 하였다. 김집의 주장에 따르면, ② 서자인 아버지는 적통을 계승하여 자기 어머니의 상에 상주를 맡지 못하였다. 대신 서자의 차자가 첩인 할머니의 상에 상주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첩인 할머니의 신분이 미천 하더라도 상례에 상주가 없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송준길과 김장생이 자취삼년복을 입지 않고 심상 3년을 하거나 심상 1년을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김집은 상주를 강조하여 承重服인 자취삼년복을 입도록 하였다.

한편 박세채는 서조모복 논의에 김집과 다르게 접근하여 『예기』 「상복소기」, 『通典』, 『儀禮經傳通解』, 『家禮』의 서조모복 사례들을 소개하였다.<sup>33)</sup> 그는 이 원전들의 논점이 서자인 아버지의 적통 계승 여부와 첩인 할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낼지 아닐지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통전』, 『의례경전통해』, 『가례』에 수록된 사례들은 서자인 아버지의 적통 계승 여부로 구분되지만,<sup>34)</sup> 『예기』 「상복소기」의 첩인 할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낸다는 문장은 첩인 할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낼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조모복 논의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예기』 「상복소기」와 관련된 사례는 鄭玄(127~200)이 『春秋穀梁傳』<sup>35)</sup>에서 인용한<sup>36)</sup> 『예기』 「상복소기」에 첩인 어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고 손자 대에서 제사를 그친다는 구절<sup>37)</sup>과 朱熹(1130~1200)가 『晦庵集』에서 『예기』 「상복소기」의 첩은 할아버지의 처인 妾祖姑에게 合祔한다고 한 경문<sup>38)</sup>을 근거로 첩을 대대로 제사 지내선 안 된다고 한 구절이다. 여기

33) 『禮記』 「喪服小記」, 『通典』, 『儀禮經傳通解』, 『家禮』에 나온 서조모복 관련 사례들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34) 『南溪續集』 卷19, 「雜著 妾祖母承重服當否議【七月十三日】」, “謹按此禮 已經先儒議論 其可考者如此 蓋所謂妾子妾孫有二種 一則其父是承重者 一則其父是不承重者 其父承重而父亡子代 則官如通典【三段】家禮【下段】及問解之說無服而心喪期可也 其父初無承重之事而父亡子代 則通典【第一條下段】家禮【上段】以爲當服期 通解續【薛紳事】以爲當服三年 但庚蔚之論亦以爲爲庶祖則三年 爲庶祖所生母則不三年 未詳孰是 蓋其要以係於世祭之行不行耳 所謂於子祭於孫否之說 原於穀梁傳 而鄭氏引之以爲妾母不世祭之訓 其義正矣”.

35) 『春秋穀梁傳』 卷2, 「隱公 5年」, “九月 考仲子之宮 … 於子祭 於孫止”.

36) 『南溪續集』 卷19, 「雜著 妾祖母承重服當否議【七月十三日】」, “所謂於子祭於孫否之說 原於穀梁傳 而鄭氏引之以爲妾母不世祭之訓 其義正矣”.

37) 『禮記正義』 卷33, 「喪服小記」, “慈母與妾母 不世祭也【鄭注】以其非正 春秋傳曰 於子祭 於孫止”.

38) 『禮記正義』 卷33, 「喪服小記」, “士大夫不得祔於諸侯 祔於諸祖父之爲士大夫者 其妻祔於諸祖姑 妾祔於妾祖姑 亡則中一以上而祔 祔必以其昭穆 …【疏】… 祔必以其昭穆者 解所以祖無妾 不祔曾祖而

서 중요한 부분은 후자로, 주희가 竇文卿(?~?), 萬正淳(?~?)과 나는 두 서신에서 그의 주장이 상이하다.

【두문경】 첩인 어머니를 만약 대대로 제사 지내 그 손자가 다른 날 첩인 할머니를 제사 지내면 (그녀를) 어떻게 칭하고 자신은 어떻게 칭해야 적절합니까?

【주희】 대대로 제사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제사를 지내면 그녀를 할머니라고 칭하고 자신은 손자라고 칭하는 것이 의심이 없을 것 같다.<sup>39)</sup>

위의 두문경과 주희의 서신에서 두문경은 주희에게 만약 첩인 할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내 그 손자가 첩인 할머니를 다른 날 제사 지내면 그녀와 손자 자신을 어떻게 칭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문경의 질문에 주희는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사를 지내면 손자는 첩인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하고 자신을 손자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두문경과 주희의 발언은 손자가 첩인 할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은 첩인 할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없다는 『예기』 「상복소」에 배치되는 사례다.

【만정순】(『예기』 「상복소기」에서 첩은 첩조고에 합부한다고 하였고, 正義에서는 첩인 어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고 손자 대에서 그쳐 별도의 가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春秋』에서는 9월에 仲子が 궁을 비로소 완공하였다고 하였고, 胡安國은 孟子가 惠公의 가묘에 들어가 중자가 제사 지낼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천자의 元后와 제후의 元妃는 비록 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묘에 배향해야 하고, 그 나머진 繼室 혹은 媵妾은 비록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천자와 제후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도 모두 가묘에 단을 만들어

附高祖之義也 凡附必使昭穆同 曾祖非夫同列也 然此下云 妾母不世祭 於孫否 則妾無廟 今乃云附及高祖者 當爲壇附之耳 後別釋”.

39) 『晦庵集』 卷59, 「答竇文卿」, “妾母若世祭 其孫異日祭妾祖母 宜何稱 自稱云何 世祭與否未可知 若祭則稱之爲祖母 而自稱孫無疑矣”.

따로 그녀를 제사 지내야 합니다. 합제의 경우에는 적처에 합부하여 제사 지냅니다. 제후가 再娶하지 않아 예에서 嫡이 돌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천자에게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희〕 첩모를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으면 첩조고는 영원히 없다. 이전에 두문경도 이것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에게 대답해주지 못했다. 지금 疏義의 설은 따를 수 없을 듯하고, 단을 만드는 설도 타당하지 않을 듯하다. 적처에게 합부하여 첩을 합제하는 것은 (적처와 첩을) 나란히 앉히는 것이니 더욱 편치 않다. 예에서 간혹 별도의 묘를 두는 것을 용인하였는데 살펴보지 못하였다.<sup>40)</sup>

위에서 만정순은 주희에게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기』 「상복소기」의 ‘첩은 할아버지의 첩인 첩조고에게 합부한다’는 문장의 소에서 ‘첩인 어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고 손자 대에선 그쳐 첩은 별도의 가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다. 다음 『춘추』 隱公 5년 ‘9월에 중자가 궁을 비로소 완공하였다’라는 문장에서 宋代 胡安國(1074~1138)이 ‘첩의 아들이 왕이 되면 첩은 따로 궁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한 것이 두 번째다.<sup>41)</sup>

『춘추』 은공 5년의 사례를 설명하면, 호안국은 맹자가 혜공의 가묘에 들어가서 중자가 제사 지낼 곳이 없으므로 따로 궁을 세워 중자의 어머니를 제사 지냈다고 하였다. 이는 천자와 제후의 첩이 낳은 아들(중자)이 천자와 제후의 자리에 올라서 그녀를 위해 별도의 궁을 만들어 제사 지냈음을 가리킨다. 만정순은 이 사례가 『예기』 「상복소기」처럼 가묘를 만들지 못하지만, 단을 따로 만들어 적처와 같이 제사를 지내면(합부) 적이 돌이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그는 제후가 재취하지 않아 적이 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천자에게

40) 『晦庵集』 卷51, 「答萬正淳」, “喪小記 妾附於妾祖姑 正義云 妾母不世祭 於孫否 則妾無廟 春秋考仲子之官 胡氏云 孟子入惠公之廟 仲子無祭享之所 審如是則天子之元后 諸侯之元妃 雖曰無子 必當配食於廟 而其他或繼室或媵妾 雖曰有子 而即天子諸侯之位者 皆當爲壇於廟而別祭之 至大祫則附於正嫡而祭 所謂諸侯不再娶 於禮無二嫡之說 可通於天子也 不審如何 妾母不世祭 則永無妾祖姑矣 向竇文卿亦嘗問此 無以答之 今恐疏義之說 或未可從也 爲壇之說 恐亦未安 附嫡而給妾並坐 尤爲未便 恐於禮或容有別廟 但未有考耳”.

41) 『胡氏春秋傳』 卷2, 「隱公 5年」, “九月考仲子之官【注】仲子桓母也 考者始成而祀也 其稱仲子者 惠公欲以愛妾爲夫人 隱公欲以庶弟爲嫡子 聖人以爲諸侯不再娶 於禮無二適 孟子入惠公之廟 仲子無祭享之所 爲別立宮以祀之”.

통용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만정순은 첩을 위해 단을 만드는 것과 적처와 첩을 같이 제사 지내면 적이 돌이 되는 것이 예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주희에 따르면, 첩인 어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으니 할아버지의 첩인 첩조고는 영원히 없었다. 이에 첩인 어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고 손자 대에서 그쳐 별도의 가묘가 없는 것이라는 소(疏)의 주장과 별도의 단을 만들어 첩을 제사 지내지는 주장은 상충되었다. 아울러 주희는 적처에게 합부하여 첩을 합제하면 적처와 첩을 나란히 앉히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고, 『예기』 「상복소기」에서 孔穎達(574~648)이 첩을 위해 별도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sup>42)</sup>은 상고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주희가 만정순에게 첩은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없다고 한 대답은 두문경에게 첩은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다 한 대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두문경과 만정순의 경우에서 발생한 주희의 모순 때문에 박세채는 서순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기 어렵고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sup>43)</sup> 박세채는 김집과 다르게 『예기』 「상복소기」, 『통전』, 『의례경전통해』, 『가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기』 「상복소기」의 첩은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문장에 관한 주희의 답변에서 모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문장과 관련된 두문경과 만정순의 질문에 주희는 다르게 답하였다. 두문경과의 대화에서는 첩은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다고 하였고, 만정순과의 대화에서는 첩은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없다고 말하였다. 박세채는 상이한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희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서순이 입어야 할 서조모복은 기년복이 아니라 삼년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후 1692년(肅宗 18) 崔錫鼎(1646~1715)과의 대화

42) 『禮記正義』卷33, 「喪服小記」, “士大夫不得祔於諸侯 祔於諸祖父之爲士大夫者 其妻祔於諸祖姑 妾祔於妾祖姑 亡則中一以上而祔 祔必以其昭穆 …【疏】… 妾祔於妾祖姑者 言妾死 亦祔夫祖之妾也 亡則中一以上而祔者 亡無也 中間也 若夫祖無妾 則又問曾祖而祔高祖之妾也. 祔必以其昭穆者 解所以祖無妾 不祔曾祖而祔高祖之義也 凡祔必使昭穆同 曾祖非夫同列也 然此下云妾母不世祭 於孫否則妾無廟 今乃云祔及高祖者 當爲壇祔之耳”.

43) 『南溪續集』卷19, 「雜著 妾祖母承重服當否議【七月十三日】」, “雖於人情或似不安之甚者 恐當姑從禮經通典家禮問解不世祭之義 爲少乖繆耳”.

에서도 드러난다. 이 사례에서 최석정은 서손이 할아버지의 적통을 계승할 수 없으니 할머니의 후사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취부장기를 입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박세채는 여기서도 종전과 달리 주희의 견해가 명확하지 않아 따르기 어렵다고 보았다.<sup>44)</sup>

강촌이 물었다. “첩자가 죽은 후에 (어머니인) 첩이 죽으면, 첩자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이어 삼년복을 입어야 합니까? ① 喪服圖式 本宗服條에서 왕기는 아버지가 죽은 첩자는 어머니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있으니, 손자는 단독으로 굽힐 수 없으므로 당연히 상복(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논하였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상복(삼년복)을 계승하는 것은 의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② 누군가는 할아버지의 상 이후에 적처인 할머니(적조모)의 상을 당하면 단지 적손만 승중복(삼년복)을 입어야 할 뿐이고, 서손은 아버지가 설령 먼저 죽었지만 그 상복(삼년복)을 계승하지 못하니 지금 이 첩자의 아들이 비록 그 아버지의 소생모를 위한다고 하여도 단지 첩인 할머니일 뿐이므로 감히 그 아버지가 입는 삼년복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중을 전해 받은 후에만 그 상복(삼년복)을 계승할 수 있고 중을 전해 받지 않았다면 감히 그 상복(삼년복)을 계승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떠합니까?”<sup>45)</sup>

김집, 송준길, 박세채와 같은 서인인 尹宣擧(1610~1669)도 삼년설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위의 李惟泰(1607~1684)와 닮은 서신에서 확인된다. 윤선거는 ① 『통전』 「庶祖母慈祖母服議」의 晉代 劉系之(?~?)와 王冀(271~322)의 논의에서 왕기가 서자인 아버지가 첩인 어머니를 위해 자취삼년복을

44) 『南溪續集』 卷12, 「答問【講學論禮】答崔汝和問【壬申七月十三日】」.

45) 『草廬集』 卷8下, 「問答 疑禮問答 諸公問先生答」, “美村問 妻子死後妾死 則妾子之子承其父服爲三年乎 喪服圖式本宗服條 王冀論妾子父沒 爲母得伸三年 孫無由獨屈 當服之也 以此觀之 則承父服似可無疑 或謂祖喪後嫡祖母喪 只嫡孫承重服之而已 庶孫 父雖先亡 不承其服 則今此妾子之子 雖有渠父所生母 特是庶祖母也 不敢承其父服三年 蓋必傳重然後承其服 非傳重者則不敢承其服云 此說如何”; 『魯西遺稿』 卷10, 「書 問李泰之」, “妻子死後妾死 則妾子之子 承其父服爲三年乎 ○喪服圖式本宗服條 王冀論妾子父沒 爲母得申三年 孫無由獨屈 當服之也 以此觀之 則承父服 似無可疑 ○或謂祖喪嫡祖母喪 只嫡孫承重服之而已 庶孫父雖先亡 不承其服 則今此妾子之子 雖有渠父所生母 特是庶祖母也 似不敢承其父服三年 蓋必傳重然後承其服 非傳重者 則不敢承其服云 此說如何 幸示破焉”.

입기 때문에 서손이 단독으로 굽힐 수 없다고 하였음<sup>46)</sup>을 근거로 들어 자최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그는 ② 후술할 송시열의 기년설에 대한 이유태의 생각을 물었다.

윤선거는 김집, 송준길, 박세채와 달리 『통전』의 사례를 근거로 자최삼년복을 주장하였다. 서자인 아버지가 첩인 어머니를 위해 자최삼년복을 입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아들인 서손은 한 단계 굽혀 자최기년복을 입지 못하고 아버지가 입어야 할 자최삼년복을 대신 입어야 했다. 다시 말해 윤선거는 아버지의 상복을 대신 입는(代服)의 관점에서 서조모복 논의에 접근하였다.

### 3.嫡統 강조의 期年說

한 相臣의 첩자가 죽은 후 첩인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죽으면, 손자는 어떤 상복을 입는 것이 적합합니까? 누군가는 예에서 첩인 어머니는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손자가 이미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하면 홀로 할머니의 후사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喪禮備要』 『八母圖』 가운데 서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위해 자최부장기를 입어야 한다는 문장에 따라 자최기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미 대대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니 상에 상주가 없어선 안 된다고 합니다.<sup>47)</sup>

위의 문장은 전술한 1692년(숙종 18) 박세채와 최석정의 대화 가운데 최석정의 발언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서는 서조모복에 대해 기년복과 삼년복으로 입장이 둘로 나뉘었다. 최석정은 한 상신의 예를 들면서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할머니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말과 『상례

46) 『通典』 卷98, 「禮58 庶祖母慈祖母服議」.

47) 『南溪續集』 卷12, 「答問【講學論禮】答崔汝和問【壬申七月十三日】」, “有一相臣之妾子身沒之後 妾母尚在 其亡也孫當何服 或曰禮妾母不世祭 其孫既不得後於祖 則不可獨後於其祖母 當依備要八母圖 中庶子之子爲父之母不杖期之文服期 或曰今既不得禁其世祭 則喪不可無主”.

비요』 『三父八母服之圖』에서 서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위해 자취부 장기를 입어야 한다는 말<sup>48)</sup>을 근거로 손자는 첩인 할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았다.

① 서자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가 비록 이미 죽었더라도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 ② 고을 사람들 가운데 간혹 삼년복을 입는 사람이 있으니 어쩔지 모르겠다. ③ 만약 중을 계승한 서자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모두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중을 계승하지 않은 사람의 아들이면 단지 본복만을 입어야 하므로 삼년복은 말할 게 없다. ④ 만일 자신의 아버지가 삼년복을 입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면 더욱 그렇지 않은 것이다. 대체로 조부모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 손자는 중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⑤ 지금 자신의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의 첩일 뿐이니, 그 손자가 어찌서 중을 계승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sup>49)</sup>

기년복을 주장하는 측의 주요 논점은 송시열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閔泰重(1640~1692)과의 서신에서 송시열은 서손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에 관해 말하였다. ② 당시 고을 사람들 가운데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시열은 이에 의문을 품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① 서손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③ 서자인 아버지가 적통을 계승하면 아들인 서손은 첩인 할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을 수 없었다. 적통을 계승하지 않으면 서손은 첩인 할머니를 위한 복으로 본복인 기년복을 입어야 했다. 이 때문에 송시열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48) 이는 부록의 『상례비요』 『삼부팔모복지도』 표를 참조. 해당 표는 2008년에 경성대학교에서 출간한 『한국예학총서』에 수록된 『상례비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49) 『宋子大全』 卷86, 『書 答閔士昂』, “庶子之子 爲其父之母 父雖已死 亦當服期 而鄉人或有不三年者 未知如何 若是承重庶子之子 則無論父在與否 而皆當無服 非承重者之子 則只服本服矣 三年則甚無謂矣 若謂其父當服三年 故代服三年云爾 則有大不然者 凡孫之爲祖父母三年者 是承重故也 今其祖母 是其祖之妾而已 則其孫豈可亦謂之承重而服三年乎”.

그리고 ④ 자신의 아버지가 소생모를 위해 삼년복을 입기 때문에 서손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삼년복을 입는다는 논리도 할아버지와 적처인 할머니에게 삼년복을 입는 손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적통을 계승한 적손뿐이기 때문에<sup>50)</sup> 잘못된 것이었다.

이뿐 아니라 설령 ⑤ 서손이 적통을 계승하였더라도 적처인 할머니가 아닌 첩인 할머니에게 삼년복을 입어선 안 되었다. 송시열은 적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적처인 할머니에게 삼년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서손은 적손과 달리 계승할 적통이 없고,<sup>51)</sup> 적손이 없어서 적통을 서손이 대신 계승하여도 적처가 아닌 첩인 할머니에게 삼년복을 입을 수 없었다. 서조모복 논의에서 기년복의 입장은 대체로 송시열처럼 적통을 강조하였다. 이는 李遇輝(1648~1707)와의 서신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우휘〕 “중을 계승한 서자는 적처인 어머니가 설령 쫓겨났더라도 소생모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고, 중을 계승한 서자의 아들도 아버지의 어머니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데 모두 심상 3년만을 해야 합니까?”

〔송시열〕 “중을 계승한 서손이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위해 심상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문장이 없으니 억지로 결론짓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첩손은 그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해 중을 계승할 의리가 없으므로 삼년복을 행해선 안 될 듯하다. 이미 삼년복을 행하지 못하니 어찌 심상을 할 수 있겠는가?”<sup>52)</sup>

위에서 이우휘는 중을 계승한 서자와 서손이 적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첩인 어머니 혹은 할머니를 위해 자취삼년복을 입지 못하는데 심상 3년을 하는

50) 『家禮』卷4, 『喪禮 成服』, “二日齊衰三年 … 【注】 … 其加服 則嫡孫父卒爲祖母 若曾高祖母承重者也”.

51) 『宋子大全』卷122, 『書 答或人』, “妾子非爲父後者 則爲其母當服三年 而其子先亡則其子之子 亦當代服三年耶 凡以孫代服以其承祖之統 今妾子之子既無所承之統 則當只服本服矣”.

52) 『宋子大全』卷99, 『書 答李君暉』, “庶子承重者嫡母雖出 不可服所生母 庶子之子承重者 亦不可服父之母 而皆當伸心喪三年耶 庶孫承重者 爲其父之母伸心喪 未有明文 難可臆斷 蓋妾孫於其父之母 無承重之義 恐不可行三年 既不行三年 則何可伸心喪耶”.



것이 옳은지 송시열에게 물었다. 이우희의 질문은 전술한 김장생과 송준길의 삼년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송시열은 중을 계승한 서손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심상을 하는 것은 관련 문장이 없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서손은 첩인 할머니를 위해 중을 계승할 의리가 없으므로 자취삼년복을 입어선 안 된다고, 자취삼년복을 입지 못하므로 심상 3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답은 김장생과 송준길의 삼년설에 배치되는 발언이자, 기년설에서 송시열이 강조하는 적통을 이우희와의 서신에서도 강조하는 것이다.

물었다. “첩손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첩인 할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니 승중의 삼년복을 입어야 합니까? 누군가는 첩인 어머니에게는 전해 줄 수 있는 주재권이 없으니 당연히 본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미 그 제사를 모셔서 승중복을 안 입을 수 없다고 하니 두 이야기 가운데 누가 옳은지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대답하였다. “① 신독재 선생이 어떤 사람에게 대답한 글에는 상에는 비록 미천하더라도 상주가 없어선 안 되니 승중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② 옛사람들의 의도에는 일전에 ‘종자와 종손에게만 바로 승중복이 있는데, 만약 첩자와 첩손이라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는 支子이다. 오직 첩모에게만 종자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종자가 될 수 없으면 중을 계승할 의리가 없다. 첩손은 所生祖母를 위해 단지 할머니를 위한 기년복만 입어야 할 뿐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다. 옛사람들의 논의가 이와 같았으므로 여러 사람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모두 옛사람들의 말을 옳다고 하였다. 그 후에 ③ 박세채가 승중복으로 삼년복이 적절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를 행하는 사람들이 (삼년복을) 입거나 안 입거나 하였다.”<sup>53)</sup>

53) 『明齋先生疑禮問答』卷4, 『妾庶服』, “問 妾孫父歿後 遭妾祖母喪 當服承重三年乎 或云妾母無可傳之重 當服本服 或云既奉其祀 不可無承重之服 兩說孰是 願聞定教 【李蕃】 答 愼齋先生答人書 有曰 喪雖微賤 不可無主 似當服承重之服云 而先人之意 則嘗以爲宗子宗孫方有承重之服 若妾子孫 則於其父祖爲支子 不當獨於其妾母爲宗也 不得爲宗 則無承重之義 妾孫爲其所生祖母 只當服祖母期服而已 先人之見如此 故嘗以議訂於諸丈 諸丈亦皆以先人之言爲是矣 其後朴和叔以爲當承重服三年云 故世之行禮者 或服或不服云耳”.

위 尹拯(1629~1714)과 李蕃(1641~1708)의 대화에서 윤증은 송시열처럼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이번은 기년복과 삼년복의 논점을 말하고, 서조모복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윤증에게 물었다. 윤증은 우선 ① 김집이 죽은 사람이 미천하더라도 상에 상주가 없을 수 없으므로 자취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하였다. 다음 ② 옛사람들이 종자와 종손만 자취삼년복을 입을 수 있지, 지자인 서자와 서손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적통을 계승한 종자가 아니므로 할머니를 위해서는 종자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을 거론하였다. 이에 그는 옛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자취부장기복(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는 최석정과 송시열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17세기 조선에서는 ③ 박세채가 자취삼년복을 지지하여 사람들이 자취삼년복을 입거나, 자취부장기복을 입기도 하였다.

【이유태】 대답하였다. “① 첩자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소생모를 위해 일반 사람처럼 그 상복(기년복)을 입어야 한다. 말해주었던 왕기의 논의는 과연 의심스러우니, 거론한 누군가의 이야기 가운데 중을 전해 받은 후에만 그 상복(삼년복)을 계승할 수 있고 중을 전해 받지 않았다면 감히 계승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맞을 것 같다. ② (하지만) 『예기』에서 첩인 어머니를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원래 중을 계승할 의리가 없기 때문인데 어찌 삼년복을 입는 것에 근거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예기』에 첩조고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주자도 일찍이 그것을 의심하여 대대로 제사 지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사를 지내면 할머니라고 칭하고 자신을 손자라고 칭하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것에 근거하면 첩인 할머니를 간혹 제사 지낼 수 있더라도 이것은 적손이 중을 계승한 것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③ 주자는 또 적처인 어머니를 피해야 하니 단지 죽은 어머니라고만 칭하고 妣라고 칭하지 않아서 그녀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정자는 첩인 어머니는 가묘에 들여선 안 되므로 당연히 私室에서 제사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비라고 칭하지 않고 가묘에 들이지 않는데 중통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설령 그 할머니의 신주를 받더라도 제사를 없애서는 안 될 따름이다. ⑥ 적손이 중을 계승한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중을 따로 세워서 안 되는데 아버지의 상복

(삼년복)을 계승하겠는가? 이것은 요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고명께서 널리 살펴보고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이야기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sup>54)</sup>

반면 이유태의 서조모복 논의 접근 방식은 송시열, 최석정과 대동소이하 다. 위의 그가 윤선거와 나눈 서신을 보면, ① 이유태는 아버지가 소생모를 위해 입어야 할 자취삼년복을 그의 아들이 대신 입는다는(代服) 관점으로 서조모복이 자취삼년복이라고 하는 주장을 의심하였다. 대신 적통 계승을 강조하여 자취부장기복을 주장하는 송시열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② 그는 첩을 대대로 제사 지내는 문제를 상복 착용, 적통 계승과 연관 짓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유태에 따르면, 서순에게는 적통을 계승할 의리가 없고 『예기』 「상복소기」 첩조고 문장에서 주희도 첩을 대대로 지내는데 대해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첩을 대대로 제사 지낸다고 자취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지양해야 했다.

나이가 이유태는 주희와 程頤(1033~1107)가 ③ 죽은 어머니의 호칭으로 적처와 첩을 구별하고 ④ 첩인 어머니를 가묘가 아닌 私室에서 제사 지내야 한다고 하였음<sup>55)</sup>을 제시하여 ⑤ 호칭을 구별하고 가묘에 들이지 않는 것은 적통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가 첩인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을 대신 입는다는(代服) 윤선거의 관점을 지적하면서 ⑥ 적손이 중을 계승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따로 중을 세우고 아버지가 입을

54) 『草廬集』 卷8下, 「問答 疑禮問答 諸公問先生答」, “答 以爲妾子之子爲其父所生之母 服其服如衆人也 承諭王冀論 果可疑 然所示或說 傳重然後承其服 非傳重者則不敢 此說似是 禮 妾母不世祭 則元無承重之義 豈可遽服三年乎 且記有妾祖姑之文 故朱子亦嘗疑之 有曰世祭與否未可知 若祭則稱爲祖母而自稱孫無疑矣 據此妾祖母或可祭 然此與嫡孫承重似別矣 朱子曰 避嫡母 則止稱亡母 而不稱妣以別之 程子云 庶母不可入廟 當祀於私室 不稱妣不入廟而謂之宗統乎 然則雖奉其祖母神主 而祭祀不廢而已 不可別立私宗如嫡孫承重而承父之服也耶 此今世常行之事 不可不卜 幸高明博考而又問於人 得其說覆示也”; 『魯西遺稿』 卷10, 「書 問李泰之」, “草廬答 嘗以爲妾子之子 爲其父所生之母 服其服如衆人也 承諭王冀論果可疑 然所示或說 傳重然後承其服 非傳重者則不敢 此說似是 禮妾母不世祭則元無承重之義 豈可遽服三年乎 王說孫無由獨屈云者 莫是謂當服其服云耶”.

55) 『御纂朱子全書』 卷39, 「禮3 祭」, “妣者媿也 祭所生母 只當稱母 則略有別 【以下祭生母○語類】 問子之所生母死 不知題主 當何稱 祭於何所 於何所曰 今法五服年月篇中母字下注云 謂生己者 則但謂之母矣 若避嫡母 則止稱亡母 而不稱妣 以別之可也 【伊川先生云 祭於私室】”.

삼년복을 아들이 계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 1〉 17세기 서조모복에 관한 주장

인명	주장	상복	庶 해석	承重 여부	출처	비고
김장생	-	자취삼년	妾	庶孫承重	『예기』 「상복소기」	서조모복 논의 시발점
		무복 + 심상 1년			『가례』 「상례 성복」	
송준길	-	무복 + 심상 3년	妾	庶孫承重	『의례』 「상복」	
		자취부장기			衆	
김집	삼년설	자취삼년	妾	庶子承重	-	次庶孫 상주
박세채			-	-	『춘추곡량전』 「은공 5년」 『예기』 「상복소기」 『회암집』 「담두문경」 『회암집』 「담만정순」	주희 답변의 모순
윤선거			妾	庶孫非承重	『통전』 「서조모자조모복의」	부자간 대복(代服)
송시열	기년설	자취부장기	衆	庶孫承重(무복) 庶孫非承重(기년)	『가례』 「상례 성복」	적통 강조
윤증			妾	庶孫非承重 (기년, 심상 X)		
			최석정	妾	庶孫非承重	
이유태			妾	非承重	-	-
			妾	-	『회암집』, 『주자대전』	적통 강조 제사 연관 지양

위의 표56)는 17세기 서조모복 논의에 등장한 사족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에서 발생한 서조모복 논의는 김장생과 송준길의 대화를 시발점으로 하였다. 김장생은 기존에 자취삼년복을 입어도 무방하다는 쪽에서 상복을 입지 않고 심상 1년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번복하였다. 한편 송준길은 서손이 심상 3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대화를 시작으로 조선의 서

56) 김진우, 「朝鮮後期 士族의 喪禮 研究」,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74쪽.

조모복 논의는 삼년설을 주장하며 서손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자취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측과 기년설을 말하며 자취부장기복을 입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우선 삼년설에는 김집, 박세채, 윤선거가 있다. 이들은 삼년설을 지지하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김집은 죽은 사람의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상에 상주가 없어선 안 된다고 하여 첩인 할머니의 상에 서자의 차자를 상주로 세우고 자취삼년복을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집과 다르게 박세채는 『예기』 「상복소기」, 『통전』, 『의례경전통해』 등을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서조모복의 논점은 서자의 적통 계승과 첩모를 대대로 제사 지내는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가운데 박세채는 첩모를 대대로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예기』 「상복소기」의 문장에 관한 주희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희는 두 문경과의 대화에서는 그녀를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다고 하였고, 만정순과의 대화에서는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없다고 반복하였다. 박세채는 주희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서손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윤선거는 『통전』을 근거로 아버지의 자취삼년복을 대신 입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기년설에는 송시열, 윤증, 최석정, 이유태가 있다. 이들은 서손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첩인 할머니를 위해 자취부장기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가운데 이유태는 적통을 강조하지만 제사 문제를 상복 착용, 적통 계승과 연관 짓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송시열, 윤증, 최석정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첫 번째, 이들은 자취삼년복은 참취삼년복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적통을 계승한 적손만 입을 수 있는 상복이라고 강조한다. 전술하였듯 자취삼년복은 참취삼년복과 마찬가지로 적통과 관련된 상복이다. 적손은 적자가 있으면 서손으로, 적자가 없으면 적손이다. 이 때문에 적손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적처인 할머니에게 자취삼년복을 입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송시열 등은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사람, 즉 적통을 계승하지 못한 사람이 할머니를 위해 단독으로 후사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할아

버지와 할머니는 부부로, 손자는 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아버지에게 삼년복을 입기 때문에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삼년복을 입었다. 이는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서손은 할아버지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어서 할머니만을 위해서 삼년복을 입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자취삼년복은 적처인 할머니를 위해서만 입는 상복임을 주장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징에서 자취삼년복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은 적처인 할머니이다. 이에 첩인 할머니를 위해서는 그녀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어 적통을 계승하여도 자취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조선에서 사족들이 각기 다른 논점에서 서조모복을 해석하는 현상은 사족이 유교 상례의 규정을 변용하였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유교 상례와 적통이 조선 사회에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 4. 맺음말

본고는 17세기 조선에 등장한 서손의 서조모복 논의의 전개와 그 함의를 고찰하였다. 17세기는 전란을 겪는 시기로, 어떤 시기보다 예에 대한 조정과 사족의 관심이 많았던 때다. 특히 예 가운데 상례는 종법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종법의 기능은 적통과 친족 결집이 있는데, 상례 절차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는 절차는 상복이다.

상복 중 삼년복은 적통과 관련된 것으로, 참취삼년복과 자취삼년복으로 나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적장자를 위해 입는 참취삼년복과 자취삼년복 관련 문장을 통해 적장자는 앞으로 적통을 계승해야 할 사람이므로 삼년복은 적통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삼년복과 적통의 연관성은 부모가 죽은 적장자를 위해 입는 상복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손이 적처인 할머니를 위해 입는 자취삼년복에서도 확인된다. 적자와 적손이 아닌 서손은 적통을 계승하지 않아서 첩인 할머니를 위해 자취삼년복이 아닌 자취부장기복을 입었다.

서손이 첩인 할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에 대해 조선과 중국에서는 간혹 자최삼년복을 용인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특히 조선에서는 17세기에 서손의 첩인 할머니를 위한 상복, 즉 서조모복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김장생과 송준길의 대화로 시작된 서조모복 논의는 김집, 박세채, 송시열, 윤증 등을 거치면서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자최삼년복을 주장하는 측(삼년설)에는 김집, 박세채, 윤선거가 있고, 자최부장기복을 주장하는 측(기년설)에는 송시열, 윤증, 최석정, 이유태가 있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전자에서 김집은 죽은 사람의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상에 상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박세채는 『예기』 「상복소기」에 대한 두문경과 만정순의 질문에 주희의 대답이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자최삼년복을 주장하였고, 윤선거는 아버지가 입을 상복을 아들이 대신 입는 다는 대복(代服)의 관점에서 서조모복을 자최삼년복으로 보았다.

후자에서 송시열, 윤증, 최석정, 이유태는 자최부장기복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송시열 등은 자최삼년복이 참최삼년복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적통을 계승한 적손만 입을 수 있는 상복이라 강조하고, 할아버지의 적통을 계승하지 못한 사람이 할머니를 위해 단독으로 후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자최삼년복이 적처인 할머니를 위해서만 입는 상복이라고 설명하여 서손의 서조모복이 자최부장기복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서조모복에 대하여 자최삼년복과 자최부장기복으로 나뉜 17세기 조선의 상황에는 세 가지 함의가 있다. 우선 17세기 조선의 사족이 서자 혹은 서손의 자최삼년복 착용을 용인하였음은 ① 18세기와 달리<sup>57)</sup> 복상에 있어서 이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였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족의 용인은 ② 유교 상례 규정의 변용을 뜻한다. 이러한 유교 상례의 변용은 ③ 적통의 강화와 친족 규합 등에 관한 종법의 기능들이 조선 사회에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7) 조선의 서조모복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세기에 이르러 17세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18세기 조선의 서조모복 논의에 관한 학설 분기(서인, 남인), 서열의 대응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 賈公彥, 『儀禮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孔穎達, 『禮記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葵史』, 達西精舍, 1858.
- 金長生, 『沙溪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金集, 『慎獨齋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杜佑, 『通典』, 欽定四庫全書.
- 『肅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DB.
- 朴世采, 『南溪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宋浚吉, 『同春堂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楊士勛, 『春秋穀梁傳』,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魏堂, 『家禮會成』, 국립중앙도서관, 1557.
- 尹宣學, 『魯西遺稿』,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尹拯, 『明齋先生疑禮問答』, 『韓國禮學叢書』, 민족문화사, 2008.
- 李惟泰, 『草廬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朱熹, 『家禮』, 대전: 學民文化社, 2001.
- \_\_\_\_\_, 『御纂朱子全書』, 欽定四庫全書.
- \_\_\_\_\_, 『晦庵集』, 欽定四庫全書.
- 胡廣, 『禮記大全』, 欽定四庫全書.
- 胡安國, 『胡氏春秋傳』, 欽定四庫全書.
- 이이 외, 임재완 역,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三星文化財團, 2001.
- 고민정,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 \_\_\_\_\_, 『조선 후기 사족 家系の 계승방식에 관한 연구 - 부안 청호고씨 사례를 중심으로 -』, 『古文書研究』 55, 한국고문서학회, 2019.
- 김인걸, 『조선 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 - 18, 19세기 '鄕權'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정운, 『19세기 초반 경상도 사대부 家에서 庶族의 역할과 실제』, 『朝鮮時代史學報』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 김정현, 『17세기 서얼 직역 변동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진우, 『立後를 통해 본 朝鮮 後期 庶擘의 宗法的 지위』,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 \_\_\_\_\_, 『朝鮮 後期 庶擘의 宗法的 지위 약화와 그 원인』, 『朝鮮時代史學報』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a.
- \_\_\_\_\_, 『朝鮮後期 士族의 喪禮 研究』,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배재홍, 『조선 후기 서얼허통』,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 \_\_\_\_\_, 『조선 후기 서얼허통』, 『경북사학』 10, 경북사학회, 1987.



- 이상백, 『庶孽 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問題』, 『震檀學報』 1, 진단학회, 1934.
- 이종일, 『조선시대 서얼신분변동사 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 정금식, 『16세기 첩자의 제사 승계권』, 『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회사학회, 1998.
- 지승중, 『조선 전기의 서얼신분』, 『사회와 역사』 27, 한국사회사학회, 1991.
- 한기범, 『17세기 서얼의 증법적 지위 - 『예문답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1998.
- 허모영, 『19세기 김해지역 향반가문의 적서(嫡庶) 변증과 탈종(奪宗)을 둘러싼 갈등』, 『震檀學報』 132, 진단학회, 2019.

부 록

〈표 2〉 『상례비요』 「삼부팔모복지도」

<p>附異父同母兄弟 姊妹 小功</p>	<p>元不同居繼父無服者也 已有大功以上親者也 同居而繼父有子 謂先同今異或雖 齊衰三月 不同居繼父</p>	<p>同居繼父 不杖 期 父子皆無大功之親者也</p>	
<p>繼母 謂父後妻</p>	<p>嫡母 謂妾生子 稱父之 正妻也</p>		
<p>若父卒繼母嫁而已從之者杖期 繼母報服不杖期 齊衰三年 繼母出則無服 母出則爲繼母之 父母兄弟姊妹 小功</p>	<p>嫡母父母 小功 嫡母死則不服 齊衰三年 本條不著則不服 嫡母死 嫡母兄弟姊妹 小功</p>		
<p>出母 謂親母 被父離棄者</p>	<p>嫁母 謂親母 因父死 再嫁 他人者也</p>	<p>慈母 謂庶子無母而命他妾之無子者 慈己者</p>	<p>養母 謂養同宗 及三歲 以下 遺棄子者 親母同</p>
<p>齊衰杖期</p>	<p>爲父後者不服 母爲子不杖期 而爲父後猶 服齊衰杖期 女適人者大功 母爲女報服</p>	<p>齊衰三年 不命則小功</p>	<p>齊衰三年 本條不著</p>
<p>乳母 謂小乳 哺曰 乳母</p>	<p>庶母 謂父 妾之 有子 者也</p>		
<p>總麻</p>	<p>士爲庶母總麻 庶母慈己者小功 所生子齊衰三年 庶子爲父後者爲其母總 而爲其母之父母兄弟 姊妹則無服 庶子之子 爲父之母 不杖期 而爲祖後則無服</p>		

## The development and meaning of discussion on concubine grandmother's mourning clothes in the 17th century Joseon

Kim, Jin-Woo\*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and meaning of discussion on concubine grandmother's mourning clothes in the 17th century Joseon. Among the mourning clothes, the mourning clothes of three-year are related to lineage. Through the sentences, that the mourning clothes by parents for their first son, are related to the mourning clothes and lineage. The connection between the mourning clothes of three-year and lineage can be confirmed not only in the mourning clothes worn by parents for their first son but also by the grandson for the grandmother. But because concubine grandson is not in the lineage, he is not wearing the mourning clothes of three-year for his concubine grandmother.

Discussion on concubine grandmother's mourning clothes was appeared by the gentry in 17th Joseon. This discussion was divided into two opinions. First, Kim jib, Park se-chae and Yoon seon-geo claimed that concubine grandson wears zicui of three-year. On the other hand, Song si-yeol, Yoon jeung, Choi seok-jeong and Lee you-tae insisted on zicui of one-year.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says that in the 17th century Joseon, which was divided into two opinions, the gentry in the 17th century allowed concubine son and concubine grandson wear the mourning of three-year for his concubine

---

\* Researcher of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grandmother. In addition, the transformation of Confucian practices seems to have strengthened through the changes in the inheritance system in the 17th century, but it can be said that it proves that the functions of lineage system have not yet been generalized to Joseon society.

**Key words**: Joseon, Concubine grandson, Concubine grandmother,  
Mourning clothes, Lineage system